68. 대구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O 제 출 자 : 이재화 의원, 김정옥 의원, 김재우 의원, 박소영 의원,

이영애 의원, 이재숙 의원, 이태손 의원, 육정미 의원,

윤영애 의원, 전경원 의원, 정일균 의원

O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O 상정일자 : 제29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년 9월 19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재화 의원)

□ 제안이유

O 다문화가족 유아가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4조의2)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O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유아가 보편적인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O 검토 결과

- ▶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바, 다문화가족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 국적의 유아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 아울러,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4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다문화가족 유아가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만큼은 다문화가족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다만**,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만 국한되는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⁴⁹⁾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1991년 국제연합(UN)에 가입한 우리나라 또한 같은 해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음

재원하는 다문화가족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대구시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0	본 조례 개정으로 외국 국적 유아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유아는 지원을 받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원은 몇 명인지?	을 네 른 (대구 전체 만 3~5세 외국국적 유 아 350명이며, 그중 유치원 86명, 어린이집 184명 재원 중임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어린이집 재원 중인 184명은 지원에서 제외됨
0	어린이집에 재원 하는 외국 국 유아 지원이 제외됨으로 인해 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 무엇인지?	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 대 구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대구시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0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 유치유 어린이집 외국 국적 유아 모두에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이 연 닌지?	1	○ 대구시와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하였지만, 어린이집까지 지원 하는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 등 여러 부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향후 타시도 상황을 고려하여 대구 시의회, 대구시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